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5호마목”을 “법 제2조제5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사회보장 연계 사업 제4조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
인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은 위촉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결산기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라 한다)별 해당 금융협회 가입 금융회사의 법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9조제1항제5호마목”을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2.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
4.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진흥원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통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진흥원 부원장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진흥원 원장이 지명하는 1인
4.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5.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② 협의회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1년 간 교대로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 프로그램의 조정,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센터 운영에 있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의 은행협회

2. 법 제2조제8호나목의 보험협회

3. 법 제2조제8호마목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정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

원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
감독원

제42조의 제목“(보증계정의 조성 등)”을“(보완계정의 조성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법 제4
7조제1항제8호”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
정(이하 “보완계정”)”으로, “보증계정의”를 “보완계정의”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
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
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출금

가. 은행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채권 중 가계대출채권

다. 상호금융조합 등의 경우 가계대출

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중 개인에 해당하는 대출금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출연금 납부대상이 되는 대출금. 단,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
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출금

다.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
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은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
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보험
업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및 제161조의11,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제141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 「산림조합
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출연금융회사등”이라 한
다)는 매월 제2항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0.3(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해서는 전단의 출연요율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출연요율을 차감한 요율을 적용한다.

⑤ 출연금융회사등은 매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2조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을 “출연금융회사등은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중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조합, 상호저축은행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을 “출연금융회사등은 제6항”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금”을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으로, “증명하는”을 “증빙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3. 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명세서 제44조 중 “보증료 및”을 “보증료,”로, “추가보증료”를 “추가보증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로 한다.

제2장에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의3(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9조제1항제1호”를 “법 제69조제1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업무계획서”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채무조정을 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제5호 중 “규정”을 “규정 및 제5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81조”를 “법 제8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81조”를 “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공공단체의 범위)”를 “(자료제공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여성가족부장관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수급사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세청장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고용정보원장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3.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세청장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

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해당 기관의 장

4.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
-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무부장관
-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무부장관

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병무청장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다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수급권자

나.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

다. 다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가보훈처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3.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자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등 차적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다.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 등 선박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해양수산부장관

라.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 등 특허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특허청장

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4.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다음의 전산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1) 제1항제4호가목의 자료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4)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조합

원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계약·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나. 다음의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1) 제1항제4호나목의 자료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별표 1의 제목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 요율(제42조제2항 관련)”을 “출연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로 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요율
150퍼센트 초과	연 1.50%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1.25%
100퍼센트	연 1.00%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75%
50퍼센트 이하	연 0.50%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1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위변제율이란 진흥원이 각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1호의 “신용보증채무”는 이 영 시행 후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출연한 금액”은 이 영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각각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된 후에 제42조제4항에 따른 출연을 시작한다.

제3조(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u>법 제2조제5호마목</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u>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u></p> <p>2. 3. (생략)</p> <p>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p> <p>가. ~ 마. (생략)</p> <p><u><신 설></u></p> <p>바.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u>법 제2조제5호아목</u>----- ----- -----.</p> <p>1. 「<u>사회보장기본법</u>」 제3조제1호에 의한 <u>사회보장 연계 사업</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65조 <u>에 따른 상인회</u></p> <p>사. (현행 바목과 같음)</p> <p><u>제13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u></p>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은
위촉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결산
기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
융협회(이하 “금융협회”라 한
다)별 해당 금융협회 가입 금융
회사의 법 제47조제2항·제3항
에 따른 출연금의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
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경제·
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
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
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
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부
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
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

제1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
----- 법 제27조제3항-----

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2.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
4.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진흥원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른다.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회의 구성 등) ① 협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통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진흥원 부원장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진흥원 원장이 지명하는 1인
4.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5.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② 협의회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1년 간 교대로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 프로그램의 조정,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6. (생략)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8호마목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정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
----- 서민금융보완
계정(이하 “보완계정”-----
----- 보완계정의 -----
-----.

1.·2. (생략)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매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요율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무상대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채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
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

권 중 가계대출채권

다. 상호금융조합 등의 경우
가계대출

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
출채권 중 개인에 해당하
는 대출금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대출금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출연금
납부대상이 되는 대출금.
단,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
의2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
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출금

다.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
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삭 제>

<삭 제>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은

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 설>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보험업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및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제141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 「산림조합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출연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매월 제2항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0.3(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

⑤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의 명세서
4.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⑦ 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

여야 한다.

⑦ 출연금융회사등은 제6항

----- 진흥원

-----.

1. (현행과 같음)
2.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
증빙하는 --
3. 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명세서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하여 고시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보증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진흥원이 개인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다.

<신 설>

<신 설>

제44조(보증료 등) -----
----- 보증료, -----
----- 추가보증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

-----.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의3(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9

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지원센터(이하 “채무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① (생략)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삭 제>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①

----- 법 제69조제1항-----
----- 업무계획서-----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조정을 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 15. (생 략)

<신 설>

16. (생 략)

②·③ (생 략)

제56조(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채무자지원
센터를 개인채무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지원센터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무자지원센터는 제48조에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다른 위원회의 등기를 할 때 「민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로 본다.

③ 위원회와 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관련 상담, 신용 보증, 자금대출 및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무자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지사등(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5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 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8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④·⑤ (생략)

제5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규정 및 제55조의4-

6. 법 제81조제1항-----

③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1조제2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 정보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
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
정보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
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
보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
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여성가족부장관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근로장려금 결정·수급
사실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 국세청장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상실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
용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장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3.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또
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
산정보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소득세
법」에 따른 소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부가가
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세청장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독립유
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등 법률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 등 금품에 관한 전산정
보자료: 해당 기관의 장

4.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
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
보자료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신 설>

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재산자료 및 부동
산종합증명서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정
보자료: 법원행정처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
정보자료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
의 장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법무부장관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

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법무부장관

라. 「병역법」에 따른 군복
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병무청장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
정보자료

가. 다음에 해당되는지에 관
한 전산정보자료: 보건복
지부장관

1)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수
급권자·차상위계층 또
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연금법」에 따
른 수급자·수급권자

나.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같은 호 각 목
에 따른 기관의 장

다. 다음에 해당되는지에 관

한 전산정보자료: 국가보
훈처장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
공자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적용 대상
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

3.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또
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
산정보자료

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자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
의 장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등 차적정보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국
토교통부장관

다.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 등 선박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해양수산부
장관

라. 「특허법」에 따른 특허
등록 등 특허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특허청장

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
른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
기계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 국토교통부장관

4.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다음의 전산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 1) 제1항제4호가목의 자료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4)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조합원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계약·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6)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

나. 다음의 전산정보자료: 법

원 행정처장

1) 제1항제4호나목의 자료

2)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주택임대차계약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